

선	기관의 장
람	

시 G 보

제50호 2023. 12. 13.(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39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396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3-397호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6
광양시 고시 제2023-398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9
광양시 고시 제2023-40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11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2556호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3
광양시 공고 제2023-267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입허가 고시[공고]	18
광양시 공고 제2023-2697호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24호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8
광양시 규칙 제925호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5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 271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2. 14.

광 양 시 장

1. 목 적

- 가.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하고자 함.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현황

지 구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해제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		
광양 죽림	광양읍 죽림리 산292-3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30,0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신규
옥룡 추산	옥룡면 추산리 산265-3번지 일원	〃	D	29,000	〃	〃

지 구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해제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		
중마 중동1	중동 1348번지 일원	"	E	27,000	"	"
중마 중동2	중동 1349번지 일원	"	D	7,800	"	"
광영 영수	광영동 산45-4번지 일원	"	D	23,000	"	"
다압 섬진	다압면 도사리 산81번지 일원	"	C	32,53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시설 변경(급경사지 →제2종시설물)	해제
다압 도사	다압면 도사리 81번지 일원	"	B	32,010	"	"
진월 아동	진월면 신아리 산75-2번지 일원	"	C	5,20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
진월 신덕	진월면 신아리 산72-4번지 일원	"	C	8,200	"	"
진월 오사	진월면 오사리 산144-8번지 일원	"	D	135,9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시설 변경(급경사지 →제2종시설물)	"

3. 정비계획

지 구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광양 죽림	2025년 이후	5,000	사면정비 A=30,000㎡	신규
옥룡 추산	2025년 이후	5,000	사면정비 A=29,000㎡	"
중마 중동1	2025년 이후	5,000	사면정비 A=27,000㎡	"

지 구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중마 중동2	2025년 이후	3,000	사면정비 A=7,800m ²	〃
광영 영수	2025년 이후	4,000	사면정비 A=23,000m ²	〃

※ 사업 시기는 예산(국·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함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 광양시 안전과 자연재난팀(☎061-797-3266)과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일 : 2023. 12. 14.

6. 문 의 처 : 광양시청 안전과(☎ 061-797-3266)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2023. 12. 13.(수)
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 (m)	폭 (m)		시작	끝		
1	길호5길 (1차종속도로)	길	중동	중동 1865	중동 1906	도면 참조	49	8	20	3-1	3-6	마을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명 칭 :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다. 위 치 : 진월면 신아리 산1-1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광양시장
-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 13필지 13,752m²
- 나. 규 모 : 급경사지 정비 L=560m

4. 사업기간 : 2023. 5. ~ 2025. 5.

5. 연자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4,743	200	2,809	1,734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7.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사항 없음
8.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인적·물적피해 사전 예방
9.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광양시 안전과 자연재난팀
10.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정비구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및 필요 시 보강사업을 통한 재해예방 기능 유지
11. 위치도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1번지 일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명세

번호	시군구	동리	편입		지분	지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종류	
합계			13필지	13,752								
1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0-2	3,966		도		광양시청				
2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2-3	284		도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359	박*구				
3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2-6	1,400		임		광양시청				
4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1-4	864	1/6	임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52	안*호				
					1/6		경기 성남시 중동이지구 267	안*창				
					1/6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1204	안*근				
					1/6			광양시청				
					1/6							
					1/6							
5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0-7	205		임		광양시청				
6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1-1	27		도		광양시청				
7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3	2,501		임		광양시청				
8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21-2	91		도		광양시청				
9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1	111		임		광양시청				
10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0	178		도		광양시청				
11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1	2,726		도		광양시청				
12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산146-10	881		임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277-24	(주)태**업				
13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산146	518		도		광양시청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13.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7길 8-8 (마동) 외 4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2.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5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815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7길 8-8 (마동)	20231213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528-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1	20231213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202-1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구서길 38-6	20231213	20100331	행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57-253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신시2길 14	20231213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533-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직동2길 7	20231213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30	2023. 12. 13.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13.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30	2023. 12. 7.	2023. 12. 13.	건축물멸실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금천계곡 야영장에 설치할 카라반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신설

3. 주요 내용

- 금천계곡 야영장 카라반 이용료를 별표 1에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별표1)
 - 이용료/1박: 비수기 100,000원, 성수기 · 주말 140,000원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12. 4. ~ 12. 26.(22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관광과장, 전화: 061-797-4187, FAX: 061-797-2363, E-mail: jangsj03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단위: 원) <table><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데크 규격</th><th colspan="2">이용료 (1박)</th><th rowspan="2">이용 시간</th><th rowspan="2">비고</th></tr><tr><th>비수 기</th><th>성수 기, 주말</th></tr><tr><td rowspan="2">자동차 야영장</td><td>4*4m</td><td>20,000</td><td>25,000</td><td rowspan="2">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td><td rowspan="2">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td></tr><tr><td>5*6m</td><td>30,000</td><td>35,000</td></tr><tr><td colspan="2">전기이용료</td><td colspan="2">3,000</td><td></td><td></td></tr></table>					시설명	데크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4*4m	20,000	25,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5*6m	30,000	35,000	전기이용료		3,000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단위: 원) <table><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규격</th><th colspan="2">이용료 (1박)</th><th rowspan="2">이용 시간</th><th rowspan="2">비고</th></tr><tr><th>비수 기</th><th>성수 기, 주말</th></tr><tr><td rowspan="2">자동차 야영장</td><td>4*4m</td><td>20,000</td><td>25,000</td><td rowspan="2">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td><td rowspan="2">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td></tr><tr><td>5*6m</td><td>30,000</td><td>35,000</td></tr><tr><td colspan="2">전기이용료</td><td colspan="2">3,000</td><td></td><td></td></tr></table>					시설명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4*4m	20,000	25,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5*6m	30,000	35,000	전기이용료		3,000					
시설명	데크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4*4m	20,000	25,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5*6m	30,000	35,000																																																						
전기이용료		3,000																																																							
시설명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4*4m	20,000	25,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5*6m	30,000	35,000																																																						
전기이용료		3,000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table><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데크 규격</th><th colspan="2">이용료 (1박)</th><th rowspan="2">이용 시간</th><th rowspan="2">비고</th></tr><tr><th>비수 기</th><th>성수 기, 주말</th></tr><tr><td rowspan="2">자동차 야영장</td><td>5*8m</td><td>35,000</td><td>40,000</td><td rowspan="2">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td><td rowspan="2">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td></tr><tr><td colspan="2">전기이용료</td><td colspan="2">3,000</td></tr><tr><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d></td><td></td></tr></table>					시설명	데크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35,000	40,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전기이용료		3,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table><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규격</th><th colspan="2">이용료 (1박)</th><th rowspan="2">이용 시간</th><th rowspan="2">비고</th></tr><tr><th>비수 기</th><th>성수 기, 주말</th></tr><tr><td rowspan="2">자동차 야영장</td><td>5*8m</td><td>35,000</td><td>40,000</td><td rowspan="2">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td><td rowspan="2">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td></tr><tr><td colspan="2">전기이용료</td><td colspan="2">3,000</td></tr><tr><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d>신설</td><td></td><td></td></tr></table>					시설명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35,000	40,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전기이용료		3,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시설명	데크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35,000	40,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전기이용료		3,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시설명	규격	이용료 (1박)		이용 시간	비고																																																				
		비수 기	성수 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35,000	40,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15일부터 8월24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전기이용료		3,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 2023-2678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광 양 시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			
	대표자 (성명)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20 (중동1361-3)	
소하천명		백암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옥곡면 옥박리 1326 일원			
	면적	일시 14,460㎡ 영구 4,64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일시 2023. 12. 13. ~ 2024. 2. 29.(착공일로부터 3일) 영구 2023. 12. 13. ~ 영구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한전주 신설설치)			

첨합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기존 조례는 인구 늘리기 목적의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전부개정 필요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제명 개정

○ (제1조) 목적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 인구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3조) 시장의 책무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하고,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노력

○ (제5조, 제6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 인구정책 기본계획 포함사항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제7조) 인구정책사업 추진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사업 발굴 추진 지원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사업
3.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4.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 **(제10조) 인구영향검토제 실시**

- 정책수립 및 시행, 조례 제·개정 등의 단계에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인구영향검토제 실시
- 추진절차와 서식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함.

○ **(제11조) 위원회 설치**

조례명 변경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에서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

○ **(제18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운영**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운영

○ **(제19조) 인구교육**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의 중요성 이해,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활성화

○ **(제20조) 인구정책 홍보**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내서, 기념품 등 홍보물품 제작 배부

○ **(제21조) 인구의 날**

인구의 날(7월 11일) 홍보, 행사 추진

○ **(제22조) 인구정책 공모**

시민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공모전 등 개최

○ **(제23조) 전입지원시책**

전입장려를 위한 전입지원 시책 근거(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배우자,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

○ 부칙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3조(경과 조치)

- 개정 조례 시행일 이전 전입신고에 의한 전입장려지원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름.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12. 13. ~ 2024. 1. 4.(22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청년일자리카장, 전화: 061-797-1990, FAX: 061-797-4192, E-mail: ckwnst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현행조례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구영향검토제”란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정책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사업
3.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4.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제8조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인구영향검토제) 시장은 정책수립 및 시행, 조례 제·개정 등의 단계에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인구정책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각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참여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인구교육 및 홍보

제19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인구정책 홍보)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안내서, 기념품 등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1조(인구의 날) 시장은 시민에게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인구정책 공모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행사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지원사업 등

제23조(전입지원시책) ① 시장은 전입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전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지원
2. 전입학생 지원
3. 전입배우자 지원
4.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4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양시인구활력증진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 설치된 광양시인구 활력증진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광양시인구정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전입장려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전입신고에 대한 전입장려지원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따른다.

[별표]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제21조 관련)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전입세대 지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u>세대주로</u> <u>전입신고 한 사람</u>	○ 공통지원 : 전입세대 당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1회에 한함) ○ 차등지원 : 전입세대당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차등 지급 <table><tr><th>전입세대원수</th><th>지원내용</th></tr><tr><td>3명 이하</td><td>100매</td></tr><tr><td>4명 이상</td><td>150매</td></tr></table>	전입세대원수	지원내용	3명 이하	100매	4명 이상	150매	
전입세대원수	지원내용								
3명 이하	100매								
4명 이상	150매								
전입학생 지원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u>전입신고 한 학생</u> * 단, 전입학생이 세대주로 전입하는 경우 <u>전입세대와 전입학생 지원은 중복하여</u> <u>지원하지 아니하고, 신(편)입생은 입학</u> <u>증빙서류 제출 시 재학생으로 인정하여</u> <u>지원한다.</u>	○ 1인당 2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1회에 한함)							
전입배우자 지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 거주 배우자 <u>세대에 전입신고 한 사람</u>	○ 배우자 전입세대 당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50매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	○ 광양시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u>지원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주민</u> <u>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있는 기관</u> 또는 기업	○ <u>1인당 5만원으로 기관기업 당 연간</u> <u>최고 300만 원 이내</u> * 동일인 최초 1회에 한함.							
※ 전입세대, 전입학생, 전입배우자 지원은 신청일 현재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시세확장을 위한 출산·보육·전입 장려 등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 시책”이란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양시 (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산장려사업을 통해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2. “인구 늘리기 시책”이란 시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3. “전입세대”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4. “전입학생”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사람 중 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전입 배우자”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한 사람 중에서 전입신고일 전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이란 고용근로자의 적극적인 전입활동을 통해 인구 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 등을 말한다.
7.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 따른 지원 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인구활력증진사업”이란 정주민구의 유출방지 및 활력증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및 사업(활동)을 말한다.
9. “인구영향검토”란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사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와 전략, 지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출산장려 및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제3조(지원내용)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시책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2. 전입장려 시책 : 전입세대 지원, 전입학생 지원, 전입 배우자 지원,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포상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설치) 시장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활력증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 추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차원의 인구활력사업 발굴을 통한 상향식 사업 추진 방안 마련
4. 농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증대 방안 등 인구 활력지역 종합계획

제8조(구성) ①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마을공동체 리더, 청년리더, 귀농·귀촌인, 은퇴한 사람, 그리고 사회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등 인구 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이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 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인구영향검토제 시행

제11조(인구영향검토제 시행) ① 시장은 시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구영향검토제 절차 및 서식은 별표 2를 따른다.

제12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제4조 관련)

1. 지원 대상

추진 분야	시책명	지 원 대 상
전입 장려	전입세대 지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광양시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전입학생 지원	○ 전입일 기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신분이고,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학생 ※ 단, 전입세대와 전입학생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전 입 배우자 지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전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광양시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전입유도 우수기관 · 기업 포상	○ 관내 기관 또는 기업의 대표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을 광양시로 전입시킨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실적 확인일(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직원의 수가 세부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

2. 세부 지원 기준

추진분야	시책명	지원내용 및 기준										
전입장려	전입세대 지원	○ 공통지원 : 전입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1회에 한함) ○ 차등지원 : 전입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20 L)										
		전입 세대원수	차등 지원내용									
		3명 이하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매									
		4명 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150매									
	전입학생 지원	○ 전입학생 1명당 2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 (1회에 한함)										
	전입 배우자 지원	○ 배우자 전입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20 L 기준) 50매										
전입유도 우수기관 · 기업 포상	<table> <tr> <th>지급기준(전입유도 인원)</th> <th>지급액(천원)</th> </tr> <tr> <td>10명 이상 ~ 20명 미만</td> <td>1,000</td> </tr> <tr> <td>20명 이상 ~ 30명 미만</td> <td>1,500</td> </tr> <tr> <td>30명 이상 ~ 50명 미만</td> <td>2,000</td> </tr> <tr> <td>50명 이상 ~</td> <td>3,000</td> </tr> </table>		지급기준(전입유도 인원)	지급액(천원)	10명 이상 ~ 20명 미만	1,000	20명 이상 ~ 30명 미만	1,500	30명 이상 ~ 50명 미만	2,000	50명 이상 ~	3,000
	지급기준(전입유도 인원)	지급액(천원)										
	10명 이상 ~ 20명 미만	1,000										
	20명 이상 ~ 30명 미만	1,500										
	30명 이상 ~ 50명 미만	2,000										
	50명 이상 ~	3,000										

[별표 2] 1. 인구영향검토서

인 구 영 향 검 토 서

담당부서 :	과(팀)	담당자 :	(☎)
--------	------------------	-------	-----------------

사전 검토 (사업부서)			
사 업 명			
1. 해당 사업이 인 구 증 감 과 관련성이 있 습니까?	있음 []		없음 []
	1-1. 관련성이 있다면, 어 떤 인구구조(계층)에 영 향을 미칩니까? (○ 체 크, 중복 가능)	여성[] 남성[] 전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전체[]	
		1-2. 관련성이 없다면, 판 단의 근거(이유)는 무 엇입니까?	
2.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까? (○ 체크, 중복 가능)	결혼·출산[] 육아·보육[] 교육환경[] 일 자 리 [] 주거(주택)[] 문화·관광[]		
3. 사업의 성격은 무엇입니 까? (○ 체크, 중복 가능)	시설구축 [] 프로그램 지원 [] 행정서비스 지원 [] 기타 []		
4. ‘2’의 인구 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은 무엇입니까?			
5. 해당 사업을 인구 증가 성과로 측정 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무엇입니까?			

사후 검토 (전략정책담당관)	
검토사항	검토의견
6. '1'의 판단이 적절한가?	
7. '2'의 영향요소가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가?	
8. '4'의 실행전략이 적절한가?	
9. '5'의 성과측정지표가 적절한가?	
10. 종합적 검토결과	

2. 인구영향검토제 추진 절차

: 정책입안 및 인구영향 사전검토(사업부서) → 정책협의 및 사후검토 (인구담당부서) → 협의의견 반영 및 정책 최종결정(사업부서) → 정책성과 통계 및 문제점 개선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24호

붙임 :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표 9에 따른 직책수당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한 퇴직수당

별표 2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액급여

(단위: 원)

구 분	직 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 휘 자	3,838,000
	단 무 장	2,207,000
	반 주 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 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2,914,000
	단 무 장	1,724,000
	반 주 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 휘 자	3,838,000
	단 무 장	2,207,000
	악 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 원	1,455,000

[별표4]

단원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 분	직 책	지급기준	
		월정여비	수시여비
시립합창단	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악보기획담당 단 원	160,000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성악지도담당	160,000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시립국악단	지 휘 자 단 무 장 악 장 연희악장 악기기획담당 단 원	160,000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별표 9]

직책수당

(단위: 원)

구 분	직 책	직책수당
시립합창단	수석단원	50,000
시립국악단	수석단원	50,000

※ 정기평정 등을 통해 각 파트별 수석단원 임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실비보상) ①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제5조(실비보상)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별표 9에 따른 직책수당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준용한 퇴직수당																																																																								
② (생략) [별표 2] <u>월액급여</u> (단위: 원) <table><tr><th>구분</th><th>직책</th><th>월액급여</th></tr><tr><td rowspan="5">시립합창단</td><td>지휘자</td><td>3,838,000</td></tr><tr><td>단무장</td><td>1,919,000</td></tr><tr><td>반주자</td><td>1,919,000</td></tr><tr><td>악보기획담당</td><td>1,919,000</td></tr><tr><td>단원</td><td>1,455,000</td></tr><tr><td rowspan="4">시립소년소녀합창단</td><td>지휘자</td><td>2,914,000</td></tr><tr><td>단무장</td><td>1,724,000</td></tr><tr><td>반주자</td><td>1,724,000</td></tr><tr><td>성악지도담당</td><td>1,724,000</td></tr><tr><td rowspan="6">시립국악단</td><td>지휘자</td><td>3,838,000</td></tr><tr><td>단무장</td><td>1,919,000</td></tr><tr><td>악장</td><td>1,919,000</td></tr><tr><td>연희악장</td><td>1,919,000</td></tr><tr><td>악기기획담당</td><td>1,919,000</td></tr><tr><td>단원</td><td>1,455,000</td></tr></table>	구분	직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1,919,000	반주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2,914,000	단무장	1,724,000	반주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1,919,000	악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 <u>월액급여</u> (단위: 원) <table><tr><th>구분</th><th>직책</th><th>월액급여</th></tr><tr><td rowspan="5">시립합창단</td><td>지휘자</td><td>3,838,000</td></tr><tr><td>단무장</td><td>2,207,000</td></tr><tr><td>반주자</td><td>1,919,000</td></tr><tr><td>악보기획담당</td><td>1,919,000</td></tr><tr><td>단원</td><td>1,455,000</td></tr><tr><td rowspan="4">시립소년소녀합창단</td><td>지휘자</td><td>2,914,000</td></tr><tr><td>단무장</td><td>1,724,000</td></tr><tr><td>반주자</td><td>1,724,000</td></tr><tr><td>성악지도담당</td><td>1,724,000</td></tr><tr><td rowspan="6">시립국악단</td><td>지휘자</td><td>3,838,000</td></tr><tr><td>단무장</td><td>2,207,000</td></tr><tr><td>악장</td><td>1,919,000</td></tr><tr><td>연희악장</td><td>1,919,000</td></tr><tr><td>악기기획담당</td><td>1,919,000</td></tr><tr><td>단원</td><td>1,455,000</td></tr></table>	구분	직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2,207,000	반주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2,914,000	단무장	1,724,000	반주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2,207,000	악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구분	직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1,919,000																																																																							
	반주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2,914,000																																																																							
	단무장	1,724,000																																																																							
	반주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1,919,000																																																																							
	악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구분	직책	월액급여																																																																							
시립합창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2,207,000																																																																							
	반주자	1,919,000																																																																							
	악보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2,914,000																																																																							
	단무장	1,724,000																																																																							
	반주자	1,724,000																																																																							
	성악지도담당	1,724,000																																																																							
시립국악단	지휘자	3,838,000																																																																							
	단무장	2,207,000																																																																							
	악장	1,919,000																																																																							
	연희악장	1,919,000																																																																							
	악기기획담당	1,919,000																																																																							
	단원	1,455,000																																																																							

[별표 4]

단원 여비 지급표

(단위: 원)

직책	지급기준	
	지급기준	수시여비
지휘자	120,000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반주자	120,000	"
단무장 악장 연희악장 악기기획담당	120,000	"
악보기획담당 성악지도담당	120,000	"
단원	120,000	"

<신 설>

[별표 4]

단원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직책	지급기준	
		월정 여비	수시여비
시립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악보기획담당 단원	160,000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성악지도담당	160,000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시립 국악단	지휘자 단무장 악장 연희악장 악기기획담당 단원	160,000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별표 9]

직책수당

(단위: 원)

구분	직책	직책수당
시립합창단	수석단원	50,000
시립국악단	수석단원	50,000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25호

붙임 :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등급 산정 기준표(제8조 관련)

구 분	등 급 기 준 표
A등급	○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 (상비군 제외) 경력 선수 ○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 전국체전 1~3위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자 (육상 1회 이상, 볼링 2회 이상) ○ 전국대회 2~3위 입상자 (육상 2회 이상, 볼링 4회 이상)
B등급	○ 전국체전 4~6위 입상자 또는 전국대회 3~6위 입상자 (육상 2회 이상, 볼링 4회 이상)
C등급	A·B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
1.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조정할수 있다. 2. 모든 대회 성적은 최근 2년 이내 개인전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국제대회는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에 한정한다.	

【별표 3】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표(제11조 관련)

(단위 : 원/월, 1명)

구 분	지 급 범 위	지 급 액
훈련수당	감독, 코치	200,000
	선 수	250,000
국가대표 수당	선 수	300,000
경기력 향상 수당	감독, 코치, A급 선수	300,000
	B급, C급, D급 선수	200,000
급식비	선 수(합숙의 경우)	725,000
	그 외 대상	325,000
1. 국가대표 수당은 국가대표 선발된 달부터 ~ 선발 제외될 때까지 지급한다. 2. 급식비는 대회 출전 또는 전지훈련 등으로 합숙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일수를 제외하여 지급한다.		

【별표 4】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원)

등 급	지 급 액		
	1년 계약금	2년 계약금	3~5년 계약금
A등급	10,000,000원 이하	20,000,000원 이하	30,000,000원 이하
B등급	5,000,000원 이하	10,000,000원 이하	15,000,000원 이하
C등급	-	-	-

1. 등급 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2.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 및 계약금 적용이 필요할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조정할수 있다.
3. 우수선수 재계약시 우수선수 영입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재계약금을 지급한다.

【별표 5】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제2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은	동
올림픽경기 및 세계선수권 또는 아시안게임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
전국체육대회			
- 종목 개인전	1,000,000	700,000	500,000
단체전	500,000	300,000	200,000
전국규모대회 및 일반국제대회			
- 종목 개인전	300,000	200,000	100,000
단체전	100,000	80,000	50,000
1.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2. 포상금 지급 가능 종목별 전국 대회 · 육상: 한국실업육상연맹, 대한육상연맹 주최 대회 · 볼링: 전국실업볼링연맹, 대한볼링협회장 주최 대회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1】

단원의 등급 산정 기준표 (제8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분	등급 기준표	구분	등급 기준표
A 등급	1.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 (상비군 제외) 경력 선수 2. 최근 2년 이내 전국체육대회(성인일반 분야/개인종목에 한함) 및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대회) 에서 3위 이내 입상자 3. <신 설> 4. <신 설>	A 등급	1.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 (상비군 제외) 경력 선수 2.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3. 전국체전 1~3위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자 (육상 1회 이상, 볼링 2회 이상) 4. 전국대회 2~3위 입상자 (육상 2회 이상, 볼링 4회 이상)
B 등급	3. 체육관련(해당종목 선수 출신) 대학교 졸업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 선수	B 등급	전국체전 4~6위 입상자 또는 전국대회 3~6위 입상자 (육상 2회 이상, 볼링 4회 이상)
C 등급	4. A, B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	C 등급	(현행과 같음)
※ 등급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1.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시 「광양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모든 대회 성적은 최근 2년 이내 개인전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국제대회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 한정한다.	

【별표 3】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표(제11조 관련)

(단위: 원 / 월, 1명)

현 행			개 정 안		
구분	지급범위	지급액	구분	지급범위	지급액
훈련수당	감독, 코치 선 수	200,000 250,000	(현행과 같음)		
국 가 대 표 수당	선 수	<u>100,000</u>	국 가 대 표 수당	선 수	<u>300,000</u>
경 기 력 향상 수당	감독, 코치, A급 선수 B급, C급 선수	300,000 200,000	(현행과 같음)		
급식비	선수(합숙의 경우) 그 외 대상 < 신 설 >	<u>200,000</u> <u>130,000</u>	급식비	선수(합숙의 경우) 그 외 대상 (감독, 코치, 도지정 선수 등)	<u>725,000</u> <u>325,000</u>
※ 국가대표 수당은 국가대표 선발된 달부터 ~ 선발 제외될 때까지 지급한다. 급식비 지급조건은 합숙소에서 합숙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전지훈련 등으로 20일 이상 합숙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대표 수당은 국가대표 선발된 달부터 ~ 선발 제외될 때까지 지급한다. 2. 급식비는 대회 출전 또는 전지훈련 등으로 합숙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일수를 제외하여 지급한다.		

【별표 4】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기준(제1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분	영 입 기 준	지급액	구분	지급액		
				1년 계약금	2년 계약금	3~5년 계약금
A 등급	1.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 (상비군 제외) 경력 선수	15,000,000원 이하	A 등급	10,000,000원 이하	20,000,000원 이하	30,000,000원 이하
	2. 최근 2년 이내 전국체육 대회 및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 드·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B 등급	3.체육관련(해당종목 선수 출신) 대학교 졸업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 선수	5,000,000원 이하	B 등급	5,000,000원 이하	10,000,000원 이하	15,000,000원 이하
	< 신 설 >		1. 등급 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2.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 및 계약금 적용이 필 요할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조정할수 있다. 3. 우수선수 재계약시 우수선수 영입과 동일 하게 평가하여 재계약금을 지급한다.			

【별표 5】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 (제23조 관련)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금	은	동	금	은	동
올림픽경기 및 세계 선수권 또는 아시안 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20개국 이상 참가시 입상할 경우)	예 산 의 범위에서 격 려 금 지급	예 산 의 범위에서 격 려 금 지급	예 산 의 범위에서 격 려 금 지급	현행과 같음		
전국체육대회 - 종목 개인전 단체전	1,000,000 500,000	700,000 300,000	500,000 200,000	현행과 같음		
전국규모 대회 및 일반 국제대회	<u>200,000</u>	<u>150,000</u>	100,000	<u>300,000</u>	<u>200,000</u>	100,000
※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 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1.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2. 포상금 지급 가능 종목별 전국 대회 · 육상: 한국실업육상연맹, 대한육상연맹 주최 대회 · 볼링: 전국실업볼링연맹, 대한볼링협회장 주최 대회		